

의안번호	2201116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4. 8.13.
추 계 번호	24D1299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한반도 평화변영 법제기획단(이하 “기획단”)을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억 6,200만원을 비롯하여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38억 1,000만원(연평균 7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획단 설치(안 제3조, 제8조)	762	762	762	762	762	3,810	76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	통일법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둠	의무규정
2	안 제8조(수당 등)	기획단의 민간단원과 기획단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및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등), 안 제8조(수당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기획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무조정실의 유사 기획단인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소요예산을 참고하여 추계
-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기획단 설치(안 제3조, 제8조)

- 제정안은 통일법제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
-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 연간 7억 6,2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기획단은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

- 기획단장은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고, 부단장은 기획단원 중에서 기획단장이 지명하고, 기획단원은 통일법제 업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
- 유사사례로 국무조정실의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2019년 2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2019~2023년 5년간 연평균 예산은 아래와 같이 7억 6,200만원(회의참석수당, 자문료, 임차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임
 - 미세먼지기획단에는 단장 1명(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겸임)과 17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소관 사무는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등,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처리

[표 2] 미세먼지개선기획단(유사사례) 운영 예산 현황: 2019~2024년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19~2023 5년간 연평균
운영예산	1,167	832	718	551	543	88	76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여은구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여은구	02-6788-4673	cecil@assembly.go.kr